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901 |
|----------|-----|

#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서명일 의원 대표발의)



창 원 시 의 회



#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 (서명일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901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2. 25.

발 의 의 원 : 서명일 · 권성현 · 김경희 · 박해정 · 서영권  
오은옥 · 이원주 · 이종화 · 전홍표 · 정순욱  
최정훈 · 한은정 · 홍용채 의원(13명)

### 1. 제안이유

창원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 
교섭단체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 
도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교섭단체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

##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의2에 따라 창원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교섭단체”란 창원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.

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하며,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**제4조(기능)**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정당 정책의 추진
2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
3.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
4. 소속 정당과의 교류·협력
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원)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
2.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■ 지방자치법**

- 제63조의2(교섭단체)**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
-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**■ 국회법**

- 제33조(교섭단체)**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소속 의원에 이동(異動)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-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 『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검토 보고

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의원 발의예정인 「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의견임

## I 의원발의 조례제정 개요

### 1 관련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63조의2(교섭단체)

### 2 조례안 개요

- 조례안명 : 「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
- 발 의 자 : 서명일 의원
- 제 출 일 : 제141회(임시회) 발의예정
- 제안이유 : 창원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교섭단체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

※ 교섭단체관련 조례심사 현황(제4대 창원시의회)

- 발 의 자 : 이우완 의원
- 제 안 일 : 2022. 11. 17.(제120회 정례회)
- 심사결과 : 부결(표결(8)-찬성4, 반대4, 기권0)

### 3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교섭단체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교섭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### 4 시행시기 : 2026년 7월 1일

## II 검토 내용

① 관련 법령 저촉 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②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

### ○ 장·단점 분석

#### 교섭단체운영 장·단점

##### <장점>

- ❖ 정당법의 입법 취지와 이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의사 형성과 반영
- ❖ 공론화된 정당 정책을 의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
- ❖ 소속 의원 간의 의사를 수렴·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교섭창구의 단위역할

##### <단점>

- ❖ 다수 정당의 독점화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정책 미반영
- ❖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약화
- ❖ 교섭단체의 당론이 우세하여 의원 개인의 자율성이 통제될 수 있음
- ❖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범위 내 이견 발생 우려(역할 중복)

### ○ 조례안 제3조(구성)

- 제3조(구성) ① 창원시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.
-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창원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하며,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-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☞ 【검토의견】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 구성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조례 제정이 증가하였음.(법개정 이후 80%↑)  
구성 기준으로 보면 광역 평균 6명 이상, 기초 평균 4명 이상으로 창원시의회 구성인원인 5명은 적절하다고 판단됨

- 전국 자치단체 교섭단체 관련 조례 제정현황 : 53% (2024. 12. 26. 기준)

| 구 분              | 총계  | 조례  | 규칙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광역자치단체 (17/17)   | 129 | 17  | -  | 의회 기본조례에 교섭단체 관련 규정을 적용한 의회 포함 |
| 기초자치단체 (112/226) |     | 112 | -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교섭단체 구성 기준(조례상)

| 구 분    | 평균    | 최소    | 최대     | 비고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|
| 광역자치단체 | 6명 이상 | 3명 이상 | 12명 이상 |    |
| 기초자치단체 | 4명 이상 | 3명 이상 | 9명 이상  |    |

- 경상남도 및 유사 자치단체 교섭단체 구성 현황

| 구 분   | 조 례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원수 | 구성인원  | 정당별 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상남도  |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    | 64  | 10%이상 | 국민의힘:60명<br>더불어민주당:4명                |
| 김 해 시 |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| 25  | 5명이상  | 국민의힘: 14명<br>더불어민주당: 11명             |
| 고 양 시 |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| 34  | 5명이상  | 국민의힘: 15명<br>더불어민주당: 17명<br>무소속 : 2명 |
| 성 남 시 |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| 34  | 9명이상  | 국민의힘: 18명<br>더불어민주당: 16명             |
| 수 원 시 |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                    | 37  | 5명이상  | 국민의힘: 20명<br>더불어민주당: 16명<br>진보당: 1명  |
| 용 인 시 |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| 31  | 3명이상  | 국민의힘: 14명(제명1)<br>더불어민주당: 17명        |
| 화 성 시 |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| 25  | 8명 이상 | 국민의힘: 11명<br>더불어민주당: 13명<br>개혁신당: 1명 |

## ○ 조례안 제4조(기능)

제4조(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정당 정책의 추진
2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
3.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
4. 소속 정당과의 교류·협력
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☞ **【검토의견】**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 간의 의사를 수렴·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교섭창구의 단위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으나 교섭단체의 당론이 우세하여 의원 개인의 자율성이 통제될 수 있음

또한 현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의회의 경우 교섭단체의 대표가 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선임되어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범위 내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음

#### - 교섭단체의 대표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 선임되어 운영되는 사례

| 구분             | 교섭단체 대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당연직 선임 조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 상 남 도        | <b>【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】</b><br>제6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③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.        |
| 경 기 도<br>용 인 시 | <b>【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】</b><br>제4조(상임위원회 위원) ④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.   |
| 경 기 도<br>성 남 시 | <b>【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】</b><br>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②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 |
| 경 기 도<br>부 천 시 | <b>【부천시의회 기본 조례】</b><br>제37조(상임위원회 위원) ④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                    |
| 경 기 도<br>김 포 시 | <b>【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】</b><br>제5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④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 |

#### ○ 조례안 제5조(지원)

**제5조(지원 등)**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
2.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

☞ **【검토의견】**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은 2026년 5대 개원 시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, 교섭단체 기능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의 경우 규정상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지원할 수 있음

현재 기존 5개 상임위원회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장단 및 특별위원장에게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음

향후 다수 교섭단체 활동 예산지원 요청 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 지원 항목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

- 경상남도 및 유사 자치단체 교섭단체 지원조항

| 구 분  | 지원조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상남도 | 제3조(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)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b>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</b>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김해시  | 제4조(교섭단체의 지원) 의회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<b>경비를 지원</b> 할 수 있다.<br>1. 교섭단체 의정활동 경비<br>2.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경비          |
| 성남시  | 제2조의3(지원 등) 의회 의장은 제2조의2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<b>사업비 등을 지원</b> 할 수 있고,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  |
| 용인시  | 제2조의4(교섭단체 지원 등) 의장은 제2조의3에 따른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공청회, 세미나,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<b>필요한 경비를 지원</b> 할 수 있다. |

| 구 분   | 의원수 | 교섭단체                     | 경비지원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비 지원조항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경상남도  | 64  | 국민의힘60명<br>더불어민주당:4명     | 의정운영공통경비 3,000만원<br>(1인 50만원*60명)      | ○       |
| 김 해 시 | 25  | 국민의힘 14명<br>더불어민주당: 11명  | 의정운영공통경비 1,250만원<br>(1인 50만원*25명)      | ○       |
| 용 인 시 | 32  | 국민의힘: 15명<br>더불어민주당: 17명 | 의정운영공통경비 2,200만원<br>(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% 지원) | ○       |
| 성 남 시 | 34  | 국민의힘 18명<br>더불어민주당: 16명  | 의정운영공통경비 2,540만원<br>(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% 지원) | ○       |

### ③ 재정 부담

- 예산과목 : 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
- 지원방법 : 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조정
- 조정사유 :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(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b>의정운영공통경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비성격 :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공청회, 세미나,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</li> <li>의회 관련 총액 한도 내 자율 편성</li> <li>(예외)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을 목적으로, <b>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액의 최대 10% 추가 편성 가능(다음연도 총액한도 산정 시에는 한도초과 증액분은 제외 후 산정)</b></li> </ul> <p>★ 추가편성은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며,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</p> |
| <p><b>의회운영업무추진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비성격 : 지방의회 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·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</li> <li>의회 관련 총액 한도 내 자율 편성</li> <li>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하여는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계상 가능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III 운영 현황

#### 1 교섭단체 운영부서

○ 경상남도 및 유사 자치단체 운영조직

| 구 분   | 운영부서           | 업무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경상남도  |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운영담당 | 예산지출 및 업무지원 |
| 김 해 시 | 의정팀            | 예산지출 및 업무지원 |
| 고 양 시 | 의사팀            | 예산지출 및 업무지원 |
| 성 남 시 | 의정팀            | 예산지출 및 업무지원 |
| 수 원 시 | 의정팀            | 예산지출 및 업무지원 |
| 용 인 시 | 의정팀            | 예산 지출       |

#### 2 교섭단체 대표들의 의장단회의 참석 여부

| 구 분   | 참석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상남도  | 확대의장단회의 참석<br>(의장단회의도 있으나 주로 확대의장단회의 개최) |
| 용 인 시 | 의장단회의 참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성 남 시 | 의장단회의 참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 양 시 | 의장단회의 참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 원 시 | 의정협의회 참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 천 시 | 안건에따라 참석유무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김 포 시 | 의장단회의 참석 안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김 해 시 | 의장단회의 참석 안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IV 종합 의견

○ 상위법 저촉여부 : 없음

○ 부서종합의견 : 조례 제정 동의

-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 및 소속 의원 간의 의사를 수렴·조정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교섭단체의 당론이 우세하여 의원 개인의 자율성이 통제될 수 있음
-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확보에 대한 방안 마련과 예산지원 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세부조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

## 「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###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재정수반요인

- 제5조(지원 등)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
**제4조(비용추계 제외대상)**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 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.

#### 4. 작성자

-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박 정 이